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321

발의연월일: 2024. 7. 29.

발 의 자 : 윤준병 • 민형배 • 박민규

이성윤 • 이춘석 • 박희승

허종식 · 정진욱 · 황명선

양부남 • 문진석 • 이재관

서삼석 • 안태준 • 복기왕

김유덕 • 정동영 • 이워택

박수현 • 안호영 의원

(2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제(日帝)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禮遇)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적용시기에 있어 일제의 국권침탈(國權侵奪)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일제의 국권침탈(國權侵奪) 전후'라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해 국권침탈 시기가 법에서 명확히 정의되지 않고 있으며, 지난 1962년 당시 공적심사 내규에 독립운동의 기점을 을미의병으로 정해놓고 있 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을미의병 참여자 145명에 대해서는 서훈하고 있으면서도, 같은 시기의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해서는 「동 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라 1894년 9월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농민 중심의 혁명 참여자로 정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훈에서 배제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일제의 국권침탈(國權侵奪) 전후'를 1894년 일본군 경복궁 점령 사건·1895년 을미사변·1905년 을사조약·1910년 한일합병조약 등 일제(日帝)로부터 국권이 현저하게 침해되었거나 국권이 침탈된 시기로 명확히 규정하여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비롯해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국가가 합당한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일제의 국권침탈(國權侵奪) 전후"란 1894 년 일본군 경복궁 점령 사건·1895년 을미사변·1905년 을사조약· 1910년 한일합병조약 등 일본제국주의로부터 국권이 현저하게 침해 받았거나 국권이 침탈된 시기를 말한다.

제4조제1호 중 "국권침탈(國權侵奪)"을 "국권침탈"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일제		
	의 국권침탈(國權侵奪) 전후"란		
	<u>1894년 일본군 경복궁 점령 사</u>		
	<u>건·1895년</u> 을미사변·1905년		
	을사조약·1910년 한일합병조		
	약 등 일본제국주의로부터 국		
	권이 현저하게 침해받았거나		
	국권이 침탈된 시기를 말한다.		
제4조(적용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제4조(적용 대상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독립유			
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순국선열: 일제의 <u>국권침탈</u>	1		
(國權侵奪) 전후로부터 1945			
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			
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			
로로 건국훈장(建國勳章)·건			
국포장(建國褒章) 또는 대통			
령 표창을 받은 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